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19-48호
2019. 7. 23.(화)

차 례

공 고(1)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공고 제2019-672호)1

입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9-669호)2

공									
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19. 7. 23.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9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을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공사관리 및 감독, 보조금 지원, 재·세정(공유재산관리, 지방세), 인·허가(도로·하천·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농지·산지 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용도변경·가설건축물 신고, 옥외 광고물 허가, 공장설립·등록, 화물 자동차운송사업허가, 배출시설 허가)분야 민원인, 소속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19년도 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2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35조 개정사항 반영(안 제31조제4항)

- 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 조항 일부 삭제(안 제4조제2항제4호).
- 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기준 제8조 개정사항 반영 (안 제30조제3항)
- 라.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9조제2항)
- 마. 운영상 나타난 미비 조문 정비(안 제11조제1항, 안 제30조제4항, 안 제31조제2항, 안 제46조제3항)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규제심사: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소관부서 협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소관부서 협의
 - 5) 입법예고: 2019. 07. 23. ~ 2019. 08. 12. / 20일 이상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9. 08.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민원지적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덕구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지적과

(전화 : 042-608-5302, FAX : 042-608-3825, E-mail : seungrokk@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원지적과 담당자(042-608-53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9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목”을 “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 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심의회회의 심의사항)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u>330제곱미터 이하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일반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u></p> <p>5. (생략)</p> <p>제29조(토석 채취료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의 토석의 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단서 신설></p> <p>③ ~ ⑤ (생략)</p> <p>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p>	<p>제4조(심의회회의 심의사항)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삭제></p> <p>5. (현행과 같음)</p> <p>제29조(토석 채취료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다만, 시가적용은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u></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30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p>

· ② (생략)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대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 ② (현행과 같음)

<삭제>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

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

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
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
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
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
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
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건물의 경우는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

④ 제1항-----

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 (생략)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생략)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나. (생략)

<신설>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1. 2. (현행과 같음)

③ -----
-- 호-----

1. 2.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 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수익 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제출일)
		2019.0.0.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